#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0. 7.

교 육 부 (직업교육정책관)

# 목 차 📗

I . 사업개요 ····································
Ⅱ. 추진경과 및 그간의 성과3
Ⅲ. 2020년도 지원계획 및 연차평가6
1. 중점 추진방향6
2. 2020년 지원계획8
3.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15
4. 2020년 사업 관리 방안19
Ⅳ. 주요일정25
【붙임1】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26
【붙임2】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매뉴얼(부정비리)
27
【붙임3】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 ············29
【붙임4】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대학 현황 30
【붙임5】 혁신지원사업 $(I\cdot \Pi)$ 연차평가 지표정의서 $\cdots \cdots 31$
【붙임6】 혁신지원사업(Ⅲ) 연차평가 지표정의서36

# 주요변경 사항

	구분	당초(2019년 기본계획)	변경(2020년 기본계획)	수정(2020년 기본계획)
예산		<ul> <li>2,907.86억원</li> <li>I 유형 : 2,605.5억원(87교)</li> <li>Ⅱ유형 : 130억원(10교)</li> <li>・Ⅲ유형 : 150억(15교)</li> <li>・사업관리비 : 18.36억원</li> </ul>	。 3,907.86억원 • I 유형 : 3,460.94억원(87교) • Ⅱ유형 : 172.42억원(10교) • Ⅲ유형 : 250억원(25교) • 사업관리비 : 24.5억원	<ul> <li>3,643.86억원</li> <li>I 유형 : 3,200.94억원(87교)</li> <li>Ⅱ유형 : 168.42억원(10교)</li> <li>Ⅲ유형 : 250억원(25교)</li> <li>사업관리비 : 24.5억원</li> <li>※ IV유형(전문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시업) 기본 계획은 별도 수립</li> </ul>
성	등급	-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	· 좌동
정 과 명 인센 티브 가 규모		<ul> <li>Ⅰ 유형 : 사업비의 20%</li> <li>□ Ⅱ유형 : 하위대학 시업비의 10%</li> <li>□ Ⅲ유형 : 하위대학 시업비의 10%</li> </ul>	<ul> <li>Ⅰ 유형 : 사업비의 30%</li> <li>□ Ⅱ 유형 : 사업비의 10%</li> <li>□ Ⅲ 유형 : 하위대학 시업비의</li> <li>10%</li> </ul>	<ul> <li>Ⅰ 유형 : 시업비의 약 24%</li> <li>□ Ⅱ 유형 : 사업비의 약 8%</li> <li>□ Ⅲ 유형 : 좌동</li> </ul>
	T () 원	∘ 기존 15교	<ul> <li>신규 10교(추가 선정)</li> <li>권역별 1~3교(총 10교)</li> <li>※ 미래신산업, 소재・부품・ 장비분야; 우대</li> </ul>	
Ш	I유형	· 외부시설 활용 불가	<ul><li>지자체 등 공공기관, 위탁</li><li>요청 산업체 시설, 거버</li><li>넌스 참여기관 제공시설</li><li>활용 가능</li></ul>	
	백무성 확보	-	∘ 반기별(연2회) 예산집행 현황 공개, 회계전문가 자체점검・결과 보고	o 좌동
이월가능 규모		∘1차년도 사업비의 일부 (I·Ⅱ유형 사업비의 10%, Ⅲ유형 사업비 20% 이내) 이월 가능	<ul> <li>사업비의 일부(I・Ⅱ유형 시업비의 10%, Ⅲ유형 시업비 20% 이내) 이월 가능</li> <li>・다만, 1차년도에 한해 I・Ⅱ유형 사업비의 20%, Ⅲ유형 사업비의 30%까지 이월가능</li> </ul>	· 좌동
계(	]목별 상·집행 기준	∘ 교비회계·산단회계 선택 ※ 간접비 편성 불가	<ul> <li>산단회계 선택 시 간접비</li> <li>5% 이내 편성 가능</li> <li>(2차년도에 한해 회계변경 허용)</li> <li>다만,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지급은 불가</li> </ul>	아시업비 집행 관련 핵심           제한사항만 명확하게           제시(Negative 방식)           이기타 좌동

# Ⅰ. 사업 개요

1

#### 비전 및 목표

비전

#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목표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전반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자 율 성

상향식(Bottom-up)사업 추진으로 대학 자율성 존중

# 경쟁력

■ 지역 및 산업과 대학간 연계를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

# 자<mark>율협약형</mark> ( I 유형)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자율적인 사업 추진
- 대학별전략산업및사회
   수요맞춤형 혁신 지원

# 역량강화형 (॥유형)

- 대학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 대학별 특화 체제 구축 지원

# 후진학 선도형 (삐유형)

- 평생직업교육활성화 등 미래형 고등 직업교육 체제 마련
-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 구축

#### 【 대학기본역량평가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계 】



자율개선대학 (87개교)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10개교) 진단제외대학 (3개교) 재정지원 유형

자율협약형대학 (87개교)
후진학선도형
(15개교 + 신규 10개교)
역량강화형
(10개교)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및 내용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정 지원

# □ 지원대상 : 총 97교(20년 Ⅲ유형 10교 추가 선정)

유형	권	역	수도권	대구 ·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 강원	호남· 제주	계
I 유형 (자율협약형)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혁신기반 구축	기존	24	16	13	18	16	87
<b>피</b> 유형	지역주민,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기존	3	3	3	3	3	15
( <b>후진학선도형)</b> ※ I 유형 중 선정	확선하를 위해 지자체 –	신규		10개.	교 추기	· 선정		10
<b>표</b> 유형 (역량강화형)	적정규모화 유도 및 특화 발전 지원	기존	3	1	2	2	2	10
계			27	17	15	20	18	97

##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20. 3월 ~ '21. 2월 (1년)
  - ※ 총 사업 기간: '19. 3월~'22. 2월(총 3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주기 고려
- (사업비, '20년) 총 **3,643.8**6억원 (I·Ⅲ·Ⅲ유형)
  -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사업비 변경 (3,907.86억원 → 3,643.86억원) (△264억원. I·II유형 당초 인센티브 금액의 25%)
  - ※ IV유형(전문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240억원)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19년	'20년(수정)	증감액
I 유형(자율협약형)	2,609.5억 원	3,200.94억 원	591.44억원
Ⅱ유형(역량강화형)	130억 원	168.42억 원	38.42억 원
皿유형(후진학선도형)	150억 원	250억 원	100억원
사업관리비	18.36억 원	24.50억 원	6.14억 원
총액	2,907.86억 원	3,643.86억 원	736억 원

# Ⅱ. 추진경과 및 그간의 성과

# 1 추진경과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 1. 21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공고** : '19. 1. 24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설명회** : '19. 1. 30
- I 유형(자율협약형, 87개교) 사업계획서 접수 및 컨설팅 : '19. 3~4월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19. 4. 10
- Ⅱ 유형(역량강화형) 선정 : '19. 4. 22~26
  - ※ II유형: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30개교 신청, 권역별 1~3개교 총 10개교 선정
- **Ⅲ유형**(후진학 선도형) **선정** : '19. 6. 1~21
  - ※ Ⅲ유형 : 5개 권역별 3개교씩 총 15개교 선정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88호) : '19. 5. 1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구성 · 운영** : '19. 6월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출범식** : '19. 9. 3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설계 정책연구 : '19. 9~12월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만족도 조사 : ~'19. 12월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 '19. 12. 19 ~ 12. 20
  - \* 유형별 우수사례 공유, 2차년도 사업방향 의견 청취 등(대학 총장 등 약 700여명 참석)

### 그간의 성과

2

# □ 전문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

- 전문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향식** (Bottom-up)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대학의 실험실습,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비 투자 확대로 산업체·
   현장중심 맞춤형 실용교육 기반 마련
  - ※ 실험실습 기자재(3천만원 이상) 구입 현황: ('18년) 45건 → ('19년) 58건 (28.9% 증가)
  - ※ 기자재 구입·운영비 현황: ('18년) 40.460백만원 → ('19년) 56.985백만원 (40.8% 증가)

#### <전문대학 혁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① 한국관광대학 '융합전공(Beyond+전공) 트랙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실질적인 취업맞춤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졸업자 취업처 분석, 취업분야별 102개 교과목·51개 트랙 개발, 교육과정 가이드북 제작(20년 신입생 대상 운영 예정)
- ② 영진전문대학 '글로벌 취업지원 거점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해외취업전담지원센터 설립, 국가/직무별 전공 연계 해외현장 직업교육실시(6개국/4개 계열), 국제주문식 해외취업반(6개 계열) 운영 등을 통해 '19년 21명 해외기업 입사
- ③ **울산과학대학 '실천적 지식창출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제간 융합 및 아이디어 교류체험과 제작 중심 실습 프로젝트, 융합동아리, 융합 캡스톤디자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IT경진대회 국내 대학 최초 본선 진출

#### □ 성인학습자 등의 후학습 활성화

-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 등 후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프로그램 현황(19. 11월): **운영과정 350개·참여자 약 4,800여명**
  - ※ 산·학·관 거버넌스 참여 기관 총 914개 / 산·학·관 협의체 109건 운영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평생직업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지역 내 교육기회 확대
  - ※ 프로그램 참여 대상 비율('19. 11월): 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79.8%) / 취약계층(20.2%)

####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

- ① 강동대학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지역 내 마을 의사결정권자(이장, 주민자치위원 등)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과 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낙후 마을 개선 및 관광 명소 발굴 추진
- ② 거제대학교 '수중작업 및 수중환경(잠수스쿠버)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 조선업 위기에 따른 제2의 직업 찾기의 일환으로 지역 수요 기반의 수중작업 및 수중환경(잠수스쿠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직자들의 직업전환 도모하고 지자체 사업(해녀학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

###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컨설팅 등 사업지원) 사업 참여대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I 유형('19. 3월/8월) / Ⅱ유형('19. 5월/8월) / Ⅲ유형('19. 8월)
  - ※ 우수대학 현장방문('19. 10. 15~10. 18, 4개교) 및 수요자 중심 행정컨설팅 ('19. 11. 5~11. 15, 7개교) 실시
  - 대학의 혁신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확산 포럼 개최
  - ※ 성과확산 포럼('19. 12. 19~12. 20. 대학별 사업 담당자 등 약 700여명 참석)
- (사업 운영 기준 마련) 교육부 훈령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관리·운영 규정」('19. 5. 1)을 제정하고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19. 3월)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대학-정부 소통 강화) 대학현장과 지원부서간 상시 소통을 위한
   사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참여대학 실무자 워크숍 등 개최
  - ※ 사업발전협의회 간담회 등 ('19년 총 4회) 및 홈페이지 구축
  - ※ I. Ⅱ 유형 실무자 워크숍(19. 10. 10~10. 11) / Ⅲ 유형 실무자 워크숍(19. 10. 11~10. 12)

# Ⅲ. 2020년도 지원계획 및 연차평가

# 1

### 중점 추진방향

◆ 국정과제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52-4)'와 '19. 12월 발표된 「전문대학 혁신방안」의 성공적 추진 지원

【전문대학 혁신방안 ('19. 12) 핵심 사항】

1

#### 고등직업교육 질제고

- ① 미래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
- ②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연계 강화

2

####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 강화

- ①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 ② 새로운 고등교육직업교육모델 '마이스터 대학' 도입

3

####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 ① 재정지원 확대로 직업교육 혁신지원
- ②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하고, 집행현황을 공개해 대학의 책무성·투명성 강화

# □ 미래신직업 수요 등 교육과정 혁신 유도

- 참여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교원연수, AI 등 미래 신직업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확대 유도
  - ※ 2차년도 사업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1차년도 연차평가 지표에 포함
  - 고교·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실적도 **연차평가 및** 후진학 선도대학 **신규 선정평가**시 반영

○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수입대체품목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학**은 신규선정시 우대 및 연차평가 반영

#### □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활성화 지원 확대

- Ⅲ유형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을 '19년 15개교(150억원)→ '20년 25개교 (250억원)로 확대하여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기회 대폭 지원
-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이 운영
   하는 단기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외부시설 활용 허용
  -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설, 위탁 요청 산업체 시설(현장·실습시설), 거버넌스 참여기관 제공 시설 활용 가능
  - 거버넌스 참여기관: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 참여기관(지자체, 지역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 협약체결기관)

#### □ 재정지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 예산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3분기까지 사업비의 60% 이상 조기 집행 권장
-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대학 자체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 ※ 반기별 예산집행 현황공개(대학·연구재단 홈페이지), 회계전문가를 통한 자체점검 결과 공개(연 1회),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등
-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비 연계를 통해 대학의 혁신성과
   조기 도출 및 안착 유도

### □ 원활한 현장 소통 및 성과 공유·확산

- 사업발전협의회, 유형별·지역별 워크숍, 성과포럼 등을 통해 정부-대학간, 운영대학 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확산 지속
- 원하는 대학에 **사업컨설팅을 제공**(신규선정 대학은 컨설팅 필수)해 사업 성과 제고

### 2

## 2020년 (2차년도) 지원계획

Ⅰ 유형 : 자율협약형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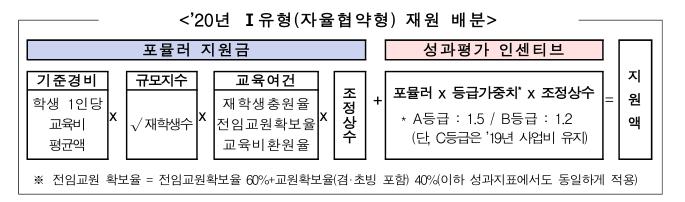
- (사업 목적) **대학이 스스로 세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Bottom-up 방식)
  -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고등직업교육 체제 혁신, 국가·지역전략 산업, 특성화 등 사회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 (지원 대상) '18년 기본역량진단 결과 전체 자율개선 대학(87개교)

권역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강원	호남·제주	계
학교수	24	16	13	18	16	87

- (지원 규모) '20년, 총 3,200.94억원
  - ※ 2020년 사업기간 : '20. 3. 1~'21. 2. 28
  -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사업비 변경(3,460.94억원→3,200.94억원)

# □ 사업비 배분 : 포뮬러 지원금 [약 76%] + 인센티브 [약 24%]

- 전체 지원금의 약 76%(약 2,422.66억원)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
   지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포뮬러로 배분
- 지원금의 약 24%(약 778.28억원)는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A·B 등급 가중치 적용, C등급은 전년도 사업비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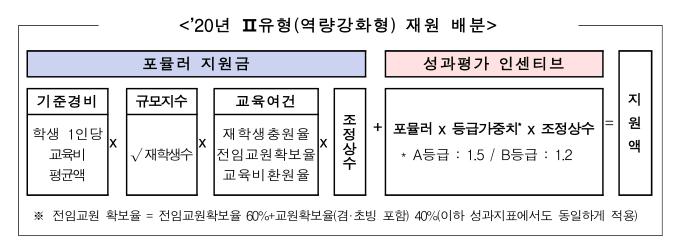
## Ⅱ유형: 역량강화형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전문대 역량강화대학 중 10개교에 대해 정원감축·구조 조정 조건(입학정원 7%) 으로 특성화 및 적정 규모화 지원
- (지원 대상) '19년 선정된 10개교

권역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강원	호남·제주	계
학교수	3	1	2	2	2	10

- (지원 규모) '20년 총 168.42억원
  - ※ 2020년 사업기간: '20. 3. 1~'21. 2. 28
  -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사업비 변경(172.42억원→168.42억원)
- □ 사업비 배분 : 포뮬러 지원금 (약 92%) + 인센티브 (약 8%)
  - 전체 지원금의 약 92%(약 155.18억원)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포뮬러로 배분
  - 지원금의 약 8%(약 13.24억원)는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A·B 등급 가중치 적용)



※ 재원 배분 포뮬러는 I유형과 동일

#### <재원배분 포뮬러 구성>

□ I 유형(자율협약형)의 약 76%, Ⅱ 유형(역량강화형) 약 92%를 동일한 포뮬러로 배분

#### < 재원배분 포뮬러 >

기준 경비		규모 지수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	√재학생수	×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 (**기준경비**) 1,034.9만원
  -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근거에 따른 전국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8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 '18년 기준 총 재학생)
- (**규모지수**) 재학생 수의 제곱근
  - ※ 학생 수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곱근을 활용하여 규모지수 표준화
- (교육여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 1, 표준편차 0.1)하여 변환점수로 산출
  -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은 0.8점, 최고점은 1.2점으로 설정(±표준편차)

- 각 지표별 변환점수를 더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 (조정상수)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 조정

$$\times$$
 조정상수 = 
$$\frac{\text{예산}}{\sum (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교육여건)}$$

※ 2020년 지원액은 2019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 고등교육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 예정(포뮬러는 매년 공시자료 및 통계자료를 갱신하여 적용)

## Ⅲ유형: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산업계 연계 강화
  - 지역 수요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 중심으로 미래 신수요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교육과정 운영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고등직업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경력단절자, 다문화 등) 장학금 등 지원 가능
    - ※ 교육프로그램에 원격교육·학습경험 인정제(RPL) 등 활용
- (지원 대상) '19년 선정된 15개교+'20년 신규선정 10교(총 25교)

권역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 ·강원	호남·제주	계
	3(4)	3	3(3)	3(4)	3(1)	15(12)

- ※ ( )는 컨소시엄 참여 대학 수
- (지원 규모) '20년 총 250억원 ※ 2020년 사업기간 : '20. 3. 1~'21. 2. 28
- □ 사업비 배분 : 교당 10억원 내외
  - ① 기존 대학: 15개교 (교당 10억±인센티브)
  - 교당 10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하위대학(C등급 3개교) 사업비의 10%를 삭감해 우수대학(A등급, 5개교)에 인센티브 지급

 평가 등급	평가 등급 학교수		·업비	'20년	사업비
8기 5日	4 H	교당	등급합산	교당	등급합산
A	5	10억원	50억원	10.6억원	53억 원
В	7	10억원	70억원	10억원	70억 원
С	3	10억원	30억원	9억원	27억 원
 총계	15		150억원		150억원

② 신규 선정대학: 10개교 (교당 10억)

### □ 2020년 10개교 신규선정 방안

- (사업 기간) 사업개시일~ '22. 2월 (총 2년)
- (지원 대상) 자율개선 대학 중 신청 가능(기존 후진학 선도대학 주관대학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참여 대학은 신청 불가)
  - ※ 단, '19년에 컨소시엄 형태로 후진학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한 협력대학의 경우, 1차 년도 사업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 신청 가능(기존 컨소시엄 반드시 유지)
- (선정 규모)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 수에 비례해 1~3교를 선정하되,
  -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의 선정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타권역에서 탈락한 대학 중 높은 점수 순으로 대신 선정 가능
    - ※ '19년 선정평가 참여 대학들의 평균 점수인 약 77점 고려

#### < 후진학 선도형 선정규모 >

권역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강원	호남·제주	계
신규선정 규모	3	2	1	2	2	10
자율 개선대학	24	16	13	18	16	87

- (컨소시엄 구성) 후진학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내 타 대학(자율 개선대학 중)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동일 권역 내 후진학 선도형(주관대학)과 협력대학 (수도권은 3개 이내, 나머지 권역은 2개 이내 가능)으로 구성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제출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간 역할 (수행 역할·내용, 예산, 대학간 체계(관계) 등)을 명확히 정의·운영해야 하고 예산은 주관대학에 60% 이상 편성(협력대학이 1개인 경우 70% 이상)해야 하며, 사업 관리·정산 등의 운영상의 총괄책임은 주관대학에 있음
- (지원 필수 조건) 전문대의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산학관 협의체 등 운영 거버넌스 체계 마련후 지원

- 상공회의소, 지역 소상공인협회, 타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지역산업체,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교육과정운영협의회 구성 등
- 거버넌스 구축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예) 협약서, 합의서, 참여 기관의 참여 의사가 포함된 운영 계획 등) 제출 및 연차평가 시 거버넌스 체계 운영 실적 검토 예정
- ※ 연계 지자체는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가능
- 기존에 산학관 협의체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 선정 평가방안

- (평가방법)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합산 하여 권역별 학교 선정
- (평가위원)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기타 고려사항)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SCK 종합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대학 대상 평가 점수 총점의 10% 감점
  - ※ 87개 자율개선 대학 중 65개교(약 75%) SCK(특성화전문대학 지원 사업) 참여
  -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 7월)에 따른 사업 신규 선정 시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규정 적용(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
    - ※ '19. 1. 1부터 사업신청서 마감 시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처분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되. 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18. 1. 1부터 사안에 대해 반영
    - ※ 사업신청서 마감 이후부터 최종 선정 이전까지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

# □ 선정 평가 지표

구 분	평	가 지표	내 용	배점
		표 및 계획의 성·타당성	·사업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5
사업 계획 (25)	발	ㅏ 중·장기 전계획과 겈 연계성	○ 후진학 선도형 사업 계획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연계성	5
	(25) 사업 배경 분석의 적절성		<ul><li>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의 적절성</li><li>기존 사업 추진 및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실적과의 연계성</li></ul>	15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li>지역주민, 구직자, 재직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질 관리의 적절성</li> <li>※ 취업지원교육, RPL, 자격교육, 재직자직무향상교육, 온라인 교육 등</li> <li>미래 신수요 교육과정 개발, 인재육성 방안</li> </ul>	20
후진학 선도형 추진	강화	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 학점 누적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등 후학습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0
- 근 전 략 (55)	지역 직업 교육	지역 직업교육 가점 센터 구축 및 운영	<ul> <li>지역 직업교육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체계·전략·성과 확산 등 운영 계획의 적절성(타 교육 (훈련)기관과의 연계 계획 포함)</li> </ul>	10
	거점 센터 운영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 산·학·관 협력체제 등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 및 거버넌스 운영 계획의 효율성	10
	재정 집행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 및 기존·타 재정지원 사업과의 효율적 연계성 ※ 중복집행 방지	5
사업 및 성과 관리 (20)		관리체계의 적절성	○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성과 전략 및 지표 설정·관리, 성과 확산 등)의 타당성 및 적절성 ○ 후진학 선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20
			합 계	100

# 3

#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

#### □ 평가 대상 : 총 97개교

- Ⅰ유형 (자율협약형, 87개교), Ⅱ유형 (역량강화형, 10개교),
   Ⅲ유형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15개교)
  - ※ Ⅲ유형은 I유형대학 중 신청·선정된 대학임

#### □ 평가 방법

#### □ 평가위원회 구성

○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 <평가위원 제외대상(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 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
- **피 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피조건\*)
  - \* **필수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등 **선택조건** : 출신 학교가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친인척·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인 경우 등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②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지표) 1차년도 사업실적과 2차년도 계획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서면평가) 실시
- (평가 등급) 유형별로 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순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 30%: 50%: 20%)
  - ※ A·B·C 등급별 비율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14~'18)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일반대, '19~'21) 와 동일 비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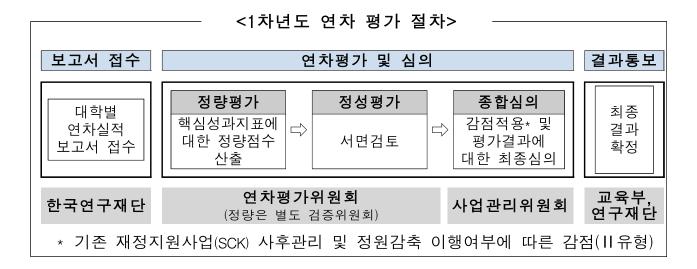
- (권역·전국단위 평가) **학교 수가 많은 I 유형은 권역별 평가**, 학교 수가 적은 **II·III유형은 전국단위로 평가**하여 **A·B·C** 등급 구분
  - 다만, 권역간 격차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I 유형 C 등급은 전국단위 평가를 거쳐 선정
  - ※ I 유형 평가 단계: 【1단계】 5개 권역별로 A·B·C 3등급을 구분 → 【2단계】 권역별 B등급내 최하위 20%와 권역별 C등급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평가 실시 및 C등급 최종 선정

【1단계: 권역별】

	A등급	B등급	C등급
5대 권역별	(30%)	(50%)	(20%)
평가	26개교	44개 교	17개 교

전 국 하위 20% 정가 9개교 17개교 C등급 최종 17개교 선정

【2단계: 전국】



#### □ 평가결과 활용

- (인센티브 지급) I 유형은 사업비의 약 24%, Ⅱ 유형은 사업비의
   약 8%를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
  - ※ 등급별 배분 가중치 : (A등급) 1.5 (B등급) 1.2
  - Ⅲ유형은 하위대학인 **C등급대학 사업비 10% 감액**후 상위대학에 인센티브로 지급
- (최종심의 및 환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우 미흡한 대학은 지원금을 조정하고, 평가결과 미흡대학은 컨설팅 실시

# □ 연차 평가지표

# Ⅱ I·Ⅱ 유형

ᇳᆌᄊᄊ	교기원모		배		평가 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	평가지표	점	'! 정 량	정 성	
	사업추진 실적(15)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수행 실적 및 적절성	15		0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재정투자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	5		0	
	적절성(10)	사업비 관리의 체계성	5		0	
I. 사업		재학생 충원율	5	0		
추진	취사사기기 ㅠ	전임교원 확보율	5	0		
실적(70)	핵심성과지표   달성도(30)	교육비 환원률	5	0		
		총 강좌 수	10	0		
		취업률	5	0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도(15)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5		0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10	0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10) 성과관리 노력의	성과관리조직(거버넌스 포함) 및 자체평가 체계 구축·운영의 적절성	5		0	
<b>Ⅱ</b> . 성과관리 (20)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적절성	5		0	
		성과평가 및 분석의 타당성	5		0	
	적절성(10)	환류(개선노력)의 적절성	5		0	
<b>=</b> 05145 .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5		0	
Ⅲ. 2차년도 사업계획(10)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0	
가점(3)		전략적 지원 성과(국가적 이슈 대응), 우수 사례 공유실적, 지역 사회 연계협력 실적	3		0	
<b>정원감축 이행</b> ※ Ⅱ유형만 해당		정원감축 이행 달성도 (미 이행시 계약해지)	_	P/F		
합계			103	40	63	

# 2 **교유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유형	
6/16 T	8/187	9×144 m		정량	정성
	시신 축 T	평생직업교육 및 후학습 활성화 추진 성과	7		0
	사업추진 실적의 적절성(15)	지역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	5		0
	728(10)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	3		0
I. 사업	사업비 집행의	재정투자 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	5		0
추진 실적 (70)	적절성(10)	사업비 관리의 체계성	5		0
	핵심성과지표 달성도(25)	지역수요 분석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적	15	0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실적 및 계획	10		0
	자율성과지표 달성도(20)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10		0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10	0	
П.	성과 관리의 적절성(15)	성과관리조직(거버넌스 포함)의 구성·운영의 적절성	5		0
<b>ル</b> . 성과관리 (15)		성과평가 및 분석의 타당성	5		0
		환류(개선노력)의 적절성	5		0
Ⅲ. 2차년도 사업계획(15)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0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0
가점(2)		우수 사례(공유실적, 지역사 회 및 국가 기여 등)	2		0
합계			102	25	77

# 4

### 2020년 사업 관리 방안

##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 사업 추진 근거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교육부 훈령)」('19.5월)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19.6월 개정)

# □ 사업 추진 체계도



## □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운영**에 대해 위탁을 받아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 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성과평가, 성과분석과 컨설팅, DB 구축 등
- (대학)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실적보고, 성과 확산 노력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검토·자문 등 **사업관련 컨설팅**
- (협의회) 사업 발전 방안 논의 및 성과 공유·확산 홍보

# 사업 관리

# □ 대학별 혁신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등 구성운영

- 대학내에 사업의 주기적 성과관리·모니터링 기구로 '**사업추진** 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세부집행 지침 마련 등 **사업관리 기능**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 평가의 투명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교원, 직원, 재학생 포함)

# □ 예산 편성 및 집행

- (회계 관리)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되, 지원 회계는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대학이 선택
  - 대학이 선택한 회계내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사업비 관리
  - ※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기간(3년) 동안 회계 변경이 불가하나, 간접비 편성 허용에 따라 2차년도에 한해 회계 변경 가능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산학협력단 직원), 성과홍보비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간접비 5%이내에서 편성 가능
  -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지급 불가

- (사업 예산 편성)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비 교부전 사업집행) 지원대학은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
  -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사업집행 범위) 사업비 비목별 핵심제한사항만 명확하게 제시 (Negative 방식)하고, 각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상 재정투자계획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
  - ※ 대학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관계법령, 지침, 대학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국고사업 추진 책무성 확보
  - 건물 신축 및 증·개축 투자 불가, 기존 교직원 급여 및 정기적 수당 지급 불가
  - 사업과 연계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는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40% 범위** 내 집행
    - ※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 사업 예산 변경·확정에 따라 연계·변동되는 시설비 부족분은 대학 자체 부담
  -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투자 불가

#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자체점검 및 공개) ① 반기별(연 2회) 예산집행 현황 공개(대학·연구재단 홈페이지), ② 회계전문가를 통한 자체점검·결과를 공개 (연 1회)하여 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부정비리 대응) ①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② 각종 법령 위반,
   ③ 입시비리, ④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재정 제재 실시
  - ※ 부정비리 정도 및 수혜 제한 기준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0.3. 개정)'에 따름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정부 재정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 사업 기간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허위 포함)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후 지원금 조정·중단 등 조치 가능
-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상 제재사안 (부정·비리 등) 발생 즉시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 의무
- (대학 자체 부담) 사업 기간 중 대학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
   발생시,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 이행 소요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 (예산 절감 유도)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은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 사업을 통해 구입한 교육기자재는 대학 간 공동사용을 권장하여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집행 투명성 확보

# □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비는 '21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일부(자율 협약형·역량강화형 10%, 후진학선도형 20% 이내)에서 사업위탁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 1차 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I.Ⅱ 유형(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20%, Ⅲ 유형(후진학 선도형) 30%이내 사업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월 가능
  -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연차별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대학은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자율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국고 집행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실시

## 성과 관리

### □ 성과 평가

### □ (I·Ⅲ·Ⅲ유형 기존대학) 2차년도 연차 평가 실시

- (평가 방법) **사업추진 성과에 대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하여 평가 실시
- (평가 등급)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종합 점수 순위에 따라 **A·B·C 등급 부여**
- (결과 활용)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년도 사업비 일부 인센티브
   지급 추진

#### ② (Ⅲ유형 신규선정 대학) 성과지표 설정 및 1차년도 연차 평가 실시

- (협약 체결) 교육부와 대학간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내용 성과 지표를 포함한 성과・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지원액 등이 포함한 성과협약 체결
  - ※ 교육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에게 협약 위탁
- (성과지표 설정) 성과 지표는 **사업 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공통의 핵심 지표 및 대학 자율 지표로 구분해 설정

#### < 성과지표 >

구 분	지표
핵심	전체 비학위과정 중 지역수요 분석에 따른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적
성과지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과정 확충 등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실적 및 계획
자율성과	기인 제고역 기인 기국 전인 일약 및 계획
지표*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율 지표 선정

\* 대학별 자율지표 개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대학의 사업 추진 내용과 연계한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표 작성

- 대학의 현재값(2019년 기준)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달성 여부 등 확인
- 성과지표 이행 여부는 연차·종합평가 등에 반영
  - ※ 하위 대학 사업비의 일부(10% 내외) 삭감 및 우수 대학 인센티브 지급 등 추진
- ※ 동 사업은 2년 사업으로 2년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 대체
-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성과지표 등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정량・ 정성평가 실시 및 등급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 □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공유) 사업계획서,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사업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성과 확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 간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자문 지원
  - ※ 신규 선정 대학(10개교)는 전체 학교 대상 컨설팅 실시
- (실무자 컨설팅) 대학 간 **노하우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 유도**를 위하여 희망대학<sup>\*</sup> 대상 **건의사항 청취** 및 **행정 컨설팅** 실시
  - % 수요조사 통한 신청접수  $\rightarrow$  사전안내(설명자료 작성요청)  $\rightarrow$  컨설팅 실시

# IV. 주요 일정

# □ 사업 계획 수립

-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20. 2월)
-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설명회('20. 2월)

# □ 연차평가 등 (기존 대학)

- 1차년도 **사업 실적보고서**('20. 5월)
- 연차평가('20. 5~6월)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20. 7월)
- 사업계획서 컨설팅('20. 8월)

# □ 신규대학 선정(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10개교)

- 사업신청서 접수 ('20.3월)
- 사업계획서 접수 ('20. 5월)
- 선정평가 ('20. 5~6월)
- 사업계획서 컨설팅('20. 7월)

# 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19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고등교육통계 조사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

지 표	산 식
	정원 내 재학생 수(명) 4cc
	작성 성천(성) - 작성 포입성시 전천(성)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재 학생	※ 구성당권· 그룹인위을 구인을 합구당권의 합 (대구성고등의 사람의 4 대 )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충원율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
	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x 60% + 교원 확보율 x 40%
	① 전임교원 확보율 = <u>전임교원 수(명)</u> × 100
	교원 법정정원(명) 교원 법정정원(명) ※ 전임교원 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작은 수
	※ 신남교원 목도를 . 약성성원 기문과 세약성 기문 중 작는 무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②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100
확보율	교원 법성성원(명)
	※ 겸임/초빙교원 인정인원의 합 : '교원 법정정원의 1/2(소수점 이하는 버림)' 과 '겸임 및 초빙 교원 환산인원의 합'중 작은 값
	'' '' '' '' '' '' '' '' '' '' '' '' ''
	※ 교원 법정 정원 :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 교원확보율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고등교육통계 교원 현황
	총 교육비(천원) — 등록구 수이초애(처위) × 100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공립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준 :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
교육비	일자 변경(교육부고시 제2016-88호)에 따름
환원율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등록금 수입 총액'항목을 활용함
	│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부정비리)

#### □ 기본방향

- (부정·비리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 (제한방법)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 선정대학은 평가 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

<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

구분	1단계	2단계
부정·비리 인지상태	▶ 형사판결 확정 전	▶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 ▶ 형사판결 확정 시
재정사업 수혜제한	<ul> <li>▶ 제한방법 : 사업비 집행·지급정지</li> <li>▶ 반영기간 : 원칙적 1년</li> <li>▶ 제한기간 : 혐의확정시까지</li> </ul>	<ul> <li>▶ 제한방법 : 평가시 감점(선정전),</li> <li>지원액 삭감(선정후)</li> <li>▶ 반영기간 : 원칙적 1년</li> <li>▶ 제한기간 : 원칙적 1년</li> </ul>

- (반영기간)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
  - 단, '입시·학사비리'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제한기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
  - 입시·학사비리이며 '중대'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해석하여 2년으로 수혜제한 기간 연장
- (심의시점) 사업별로 평가시점, 협약시점,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결정시점은 조정 가능

## □ 부정·비리 정도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판단 <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

부정·비리 정도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중대	▪ 동일한 감사에서 이사(장) 및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모두 있는 경우
 상	•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
중	<ul><li>•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li><li>•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li></ul>
하	<ul> <li>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는 경우</li> <li>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 (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li> </ul>

-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 혹은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해 입시· 학사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상, 중, 하의 경우에는 1단계 상향 조정\*
- $\star$  하  $\rightarrow$  중, 중  $\rightarrow$  상, 상  $\rightarrow$  중대로 상향하여 수혜제한 수준 확대
- ※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감봉, 견책)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

### □ 수혜 제한

- (제한방법)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
  - (신규선정)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감점 조치
  - (계속지원) 사업비 감액, 감액 사업비는 우수 대학(사업단)에 배분 가능

<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 >

부정·비리 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대학(기관)단위 지원 사업	사업단(팀)단위 지원 사업**
	총점	총점	총 사업비	총 사업비
ਤ ਯ	8%초과~10%이하	3%초과~4%이하	30%초과~40%이하	10%초과~15%이하
상	총점	총점	총 사업비	총 사업비
6	4%초과~8%이하	1%초과~3%이하	10%초과~30%이하	4%초과~10%이하
중	총점	총점	총 사업비	총 사업비
Ó	1%초과~4%이하	0.2%초과~1%이하	5%초과~10%이하	2%초과~4%이하
하	초저 10/ 이네	초저 0.00/ 이네	총 사업비	총 사업비
<u> </u>	총점 1% 이내   총점 0.2% 이	ㅎ~ 0.2% 이대	5% 이내	2% 이내

<sup>\*</sup>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sup>\*\*</sup>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비율 범위 내에서 본부로 지원되는 예산(간접비 등)과 사업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적용가능

<sup>※</sup>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 ☞ 핵심제한사항만 명확하게 제시(Negative 방식)하고, 각 대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서 상 재정투자계획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 ☞ 대학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관계법령, 지침, 대학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국고사업 추진 책무성 확보

비목	정의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교육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목적소요 경비	- 건물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매입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관련경비는 가능	- 3년간 사업비의 40% 이내(연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집행 가능
2. 기자재 구입·운영비	-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암차에 소요되는 경비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구입 시 기자재 활용계획 수립 및 대학 자체 심의·의결 필요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 가능 ※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장비 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 기존교재 원고료 지급 등 중복이중지원 경비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직접 지원금(현금, 물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 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표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4. 인건비	- 교직원 및 사업운영 보조 인력 인건비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및 사업관리운영수당 등	- 인건비 지출 시 신규채용 증빙 필요
5. 기타 사업운영경비	-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1~4)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기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학원수강료 및 외국어시험 응시료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관계법령 및 대학 내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서류(활동보고서, 일시가 포함된 회의록 등) 구비 - 도서구입비는 대학 내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6. 간접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에 한함	- 간접비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의 경우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 2019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대학 현황

# 1 I 유형

권역	I 유형 지원대학
<b>수도권</b> (24)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복대, 농협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동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신구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양여자대
대구·경북 (16)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문경대, 선린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산대
부산·울산· 경남 (13)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연암공업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
<b>충청·강원</b> (18)	강동대, 강원도립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우송정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혜전대
<b>호남·제주</b> (16)	광주보건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계	87개 교

# 2 Ⅱ유형, Ⅲ유형

권 역	표유형 지원대학 명단	Ⅲ유형 지원대학 명단 ※ ()는 협력대학
수도권	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연성대(동서울대, 인하공업전문대), 여주대(한국관광대), 유한대(한국복지대)
대구·경북	성운대	가톨릭상지대, 영남이공대, 호산대
부산·울산·경 남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b>거제대</b> , <b>부산과학기술대</b> (동주대, 부산여자대), <b>울산과학대</b> (춘해보건대)
충청·강원	강릉영동대, 송곡대학	강동대, 연암대(대전과학기술대, 신성대), 충청대(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호남·제주	조선간호대, 한영대	<b>광주보건대</b> , <b>전남도립대</b> (전남과학대), <b>전주비전대</b>
계	10개 교	15개 교

# 혁신지원사업(I · Ⅱ 유형) 연차평가 지표정의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I. 사업 추진 실적 (70)	•
1. 사업추진 실적	사업 추진 실적의 적절성(15)	<ul> <li>세부 추진전략 및 과제의 이행 여부 평가</li> <li>혁신전략별 세부 프로그램 수행 실적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li> <li>혁신전략별 세부 프로그램들이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li> </ul>	15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절성	재정투자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5)	■ 재정투자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및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프로그램별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 - 사업 추진계획 대비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률 확인 -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했는지 확인	10
	사업비 관리의 체계성(5)	<ul> <li>사업비 관리의 체계성을 평가</li> <li>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확인</li> <li>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당한 절차에 따라 예산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점검</li> </ul>	
3. 핵심성과지표 달성도	재 학생 충원 율(5)	■ 고등교육기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학부 정원을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재학생충원율 평가자료는 최근 3년치('17-'19)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공시항목 4-라-1. 재학생 충원율)하여 권역별로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시에는 100%로 환산 - 개별대학의 재학생충원율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순기여도(value-added) 평가를 통한 점수 부여	30
	전임교원 확보율(5)	<ul> <li>고등교육기관 본연의 책무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의 전임교원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li> <li>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서는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와 교원확보율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함. 점수배점은 전임교원확보율은 60%, 교원확보율은 40%로 배정</li> </ul>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ul> <li>※ 전임교원확보율 평가자료는 최근 3년치('17-'19)</li> <li>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공시항목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하여 권역별로 평가</li> <li>※ 교원확보율 평가자료는 최근 3년치('17-'19)</li> <li>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자료를 확보하여 권역별로 평가</li> <li>※ 교원확보율이 100% 초과시에는 100%로 환산</li> <li>- 개별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순기여도(value-added)평가를 통한 점수 부여</li> </ul>	
	교육비 환원률(5)	■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의 세입 중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의 비율을 점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평가 ※ 교육비환원율 평가자료는 최근 3년치('17-'19)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공시항목 9-나-1, 9-나-2, 12-다-1.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수혜 현황의학비감면 준수 여부)하여 설립유형별 (국공립, 사립)로 평가 - 개별대학의 교육비환원율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순기여도(value-added) 평가를 통한점수 부여	
	총 강좌 수(10)	■ 총강좌수 지표는 '총강좌수 유지 및 확보(5점)' 요소와 '강사 강의담당 비율(5점)' 요소로 구성 - 총강좌수 유지 및 확보 요소는 '재학생당 총강좌수(학부 정원 내 및 정원 외 재학생 기준)'를 의미하며, 해당 대학의 최근 3년('16~'18학년도) 2학기의 '재학생당 총 강좌수' 평균 대비 '19. 2학기의 '재학생당 총 강좌수' 수준을 평가함 - 강사 강의담당 비율 요소는 '해당 대학의 최근 3년('16~'18학년도) 2학기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대비 강사 강의담당 학점 비율' 평균 대비 '19.2학기 '강사 강의담당 학점 비율' 평균 대비 '19.2학기 '강사 강의담당 비율' 수준을 평가하되 (4점), 개별대학의 최근 3년('16~'18년) 강사 강의담당 학점비율 평균에 대한 가산점(1점) 부여 ■ 평가자료는 대학정보공시 '12~나~1(총강좌수)', 대학정보공시 '4~라~1(학부 정원 내·외 재학생수)', 대학정보공시 '12~나~2(강사 강의담당 비율)'를 사용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실시 이후 대학의 질 제고 노력 및 성과를 진단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 실시 이전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정함 ■ 설립유형(국·공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이나 권역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따른 구분 없이 평가 ■ 1차년도 평가는 2학기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나, 2차년도부터는 1학기와 2학기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됨	
	취업률(5)	■ 전문대학의 교육목표인 고등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들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권역별 취업률과 취업률의 개선도를 평가 ※ 취업률 평가자료는 최근 3년치('16-'18)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공시항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하여 권역별로 평가 - 개별대학의 취업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순기여도(value-added) 평가를 통한 평가등급 조정	
4.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도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5)	<ul> <li>자율성과지표가 대학의 혁신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설정 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의 지표값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가 단순 산출이 아닌 성과(outcomes)를 측정하는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을 도전적으로</li> </ul>	15
	자율성과지표 달성도(10)	설정하였는지 평가  자율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	
		Ⅱ. 성과 관리 (20)	
1.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성과관리조직 (거버넌스 포함) 및 자체평가 체계 구축·운영의 적절성(5)	<ul> <li>성과관리 거버넌스(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실적 평가</li> <li>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조(인적 구성)의 적절성 평가</li> <li>성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실적 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자체평가 실적)</li> <li>성과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실적 평가</li> <li>(대학 여건에 맞는) 성과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평가</li> <li>성과관리 조직의 운영실적 평가(추진실적 점검, 예산집행률 점검,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적,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또는 만족도조사 실적)</li> </ul>	10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적절성(5)	■ 사업 추진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여부를 평가 -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실적과 이를 통한 개선 사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2. 성과관리 노력의 적절성	성과평가 및 분석의 타당성(5)	■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성과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효과, 개선점 등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는지 평가 - 성과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 조직, 제도(규정),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 개선점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는지 점검	10		
	환류(개선노력) 의적절성(5)	■ 성과평가 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는지 평가 ■ 사업성과가 대학 내외로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 대학 내부 구성원들(보직자, 실무자, 교수, 학생)에게 사업성과가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 대학 외부 구성원들(지역사회, 타 대학)에게 사업성과가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10		
	Ⅲ. 2차년도 사업계획 (10)				
1. 2차년도 사업계획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5)	<ul> <li>■ 1차년도 사업 성과분석, 성과평가 결과를 2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평가</li> <li>─ 1차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차년도 사업계획을 고효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는지 점검</li> <li>─ 1차년도 사업 성과분석, 성과평가에 의해 도출된 개선사항이 2차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충원율 감소, 교육방법의 혁신 요구 등)를 반영하여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학사구조,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또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평가</li> <li>※ 국가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신수요 산업 등 관련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li> <li>■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li> </ul>	10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5)	■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평가 - 사업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는지 평가 - 프로그램별 예산투자 내역과 예산 비중이 성과지표 달성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평가 -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투자 내역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 2차년도, 3차년도의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을 타당하게 배분하였는지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가점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중, "국가 인력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지원 성과"로 타대학에 공유·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1점)  - 대학이 제시한 성과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한 바를 평가(성과 예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소재/부품/장비산업, 미래 신산업(AI, AR, VR 등) 분야)※ 2차년도 연차평가부터 적용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우수사례(1점)  - 1차년도에 수행한 프로그램 중,우수사례로 타대학에 공유·확산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  ■ 고교-산업체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실적(1점)	3
정원감축이행 (Ⅱ유형)	■ 정원감축 이행 달성도(미 이행 시 계약 해지)	P/F
합계		

# 혁신지원사업(Ⅲ유형) 연차평가 지표정의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u> </u>	I. 사업 추진 실적 (70)	
1. 사업추진 실적의 적절성	평생직업교육 및 후학습 활성화 추진 성과(7)	<ul> <li>■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3유형)의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수행 실적</li> <li>- 사업추진 전략별 세부 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li> <li>- 사업추진 전략이 지역사회 직업교육에 기여한 성과 평가</li> <li>■ 지역주민, 구직자, 재직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적절성</li> <li>■ 학점 누적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등후학습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및 운영 성과</li> </ul>	
	지역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5)	<ul> <li>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li> <li>거점센터가 지역 직업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평가</li> <li>운영체계의 적절성 평가: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참여도 등</li> <li>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성과</li> <li>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 실적 및 지역 직업교육에의 기여도를 평가</li> </ul>	15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3)	■ 산·학·관 협력체제 등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 ■ 산·학·관 협력체제 등 거버넌스 운영 실적의 우수성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재정투자 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5)	<ul> <li>■ 재정투자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및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li> <li>□ 세부 프로그램별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li> <li>□ 사업 추진계획 대비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li> <li>□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li> <li>□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했는지 확인</li> <li>■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수익 재투자 계획 및 실적의 적절성</li> <li>■ 사업비 관리의 체계성을 평가</li> </ul>	10
	사업비 관리의 체계성(5)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확인 -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당한 절차에 따라 예산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3. 핵심성과지표 달성도	지역수요 분석 기반 직업교육과정	■ 지역수요분석에 따른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의 적절성 - 지역수요분석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25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ul> <li>지역수요분석 결과를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한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li> <li>지역수요분석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타당히 이뤄졌는지 확인</li> <li>직업교육과정이 개설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li> </ul>	
	운영 실적(15)	<ul> <li>■ 직업교육과정 개발 시 지역수요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를 계획대비 실적 평가를 통해 확인</li> <li>■ 지역수요 분석에 따라 개설 계획을 수립한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비율</li> <li>- 운영 직업교육과정 수 ÷ 개설 계획 직업교육과정 수</li> <li>- 지역수요 분석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li> <li>■ 지역수요 분석에 따라 개설 계획을 수립한 직업교육</li> </ul>	
		- 운영 직업교육과정 수 ÷ 개설 계획 직업교육과정 수 - 지역수요 분석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 비율에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실적 및 계획(10)	<ul> <li>- 후학습 활성화 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li> <li>- 관련 조직 및 규정이 마련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li> <li>■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li> </ul>	
4.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10)	<ul> <li>자율성과지표가 대학의 혁신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있는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설정 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의 지표값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지 평가</li> <li>자율성과지표가 단순 산출이 아닌 성과(outcomes)를 측정하는지 평가</li> </ul>	20
4	자율성과지표 달성도(10)	<ul><li>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는지 평가</li><li>자율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li></ul>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Ⅲ. 성과 관리 (15)	
1. 성과관리의 적절성	성 과관리 조직 (거버넌스 포함)의 구성·운영의 적절성(5)	<ul> <li>성과관리 거버넌스(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실적 평가</li> <li>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조(인적 구성)의 적절성 평가</li> <li>성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실적 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자체평가 실적)</li> <li>성과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실적 평가</li> <li>(대학 여건에 맞는) 성과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평가</li> <li>성과관리 조직의 운영실적 평가(추진실적 점검, 예산집행률 점검,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적,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또는 만족도조사 실적)</li> </ul>	
	성과평가 및 분석의 타당성(5)	<ul> <li>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성과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효과, 개선점 등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평가</li> <li>성과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 조직, 제도(규정),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 개선점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점검</li> </ul>	15
	환류(개선노력) 의 적절성(5)	■ 성과평가 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는지 평가 ■ 사업성과가 대학 내외로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 대학 내부 구성원들(보직자, 실무자, 교수, 학생)에게 사업의 성과가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 대학 외부 구성원들(지역사회, 타 대학)에게 사업의 성과가 공유·확산되었는지 평가	
	I	Ⅲ. 2차년도 사업계획 (15) 	
1. 2차년도 사업계획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10)	<ul> <li>■ 1차년도 사업 성과분석, 성과평가 결과가 2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평가</li> <li>- 1차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차년도 사업계획이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점검</li> <li>- 1차년도 사업 성과분석, 성과평가에 의해 도출된 개선사항이 2차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지역 수요 변화, 산업 동향, 국가 전략 등)를 반영하여 2차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평가</li> <li>- 대학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및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또는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li> <li>※ 국가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신수요 산업 등 관련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li> <li>■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li> </ul>	15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배점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5)	■ 2차년도 재정투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사업의 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 - 프로그램별 예산투자 내역과 예산 비중이 성과지표 달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 -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투자 내역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를 평가 - 2차년도, 3차년도의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이 타당하게 배분되었는가를 평가	
가	점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3유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사례 - 1차년도에 수행한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타대학에 공유한 실적을 평가(1점) - 대학이 제시한 우수사례가 대학혁신에 기여한 부분, 지역사회(지역특화·주력산업) 및 국가(국가성장동력산업) 등에 기여한 바를 평가(1점)	2
합 계			102